

## 2

##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향 지원

### 문 의

고용노동부	고용정책총괄과	(☎ 044-202-7223)
충청북도	일자리정책과	(☎ 043-220-3383)

❖ 고용유지지원금(휴업, 휴직) 지원금액 비율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/4 수준으로, 기타 대기업은 2/3수준으로 상향 지급됩니다.

### ● 제도개요

- 코로나 19 여파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(휴업, 휴직)를 실시하고 고용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

### ● 지원대상

-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조업(부분) 중단된 사업장으로 고용유지조치(휴업, 휴직)하는 사업주

### ● 지원내용

- 지원수준
  - 우선지원대상기업 :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·휴직 수당의 2/3 → 3/4(67%→75%)으로 상향 지원
    - ※ 한시적 추가 상향 : 9/10(90%) 지원(4.1~6.30. 고용유지조치 사업주)
  - 기타 대기업 : 1/2 → 2/3 (50%→67%)으로 상향 지원
- 지원한도 : 1일 상한액 66,000원(연180일)
- 지원기간 :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('20. 2. 1~'20. 7. 31.)

### ● 신청접수

- 고용유지조치(휴업·휴직) 계획서 제출(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)  
→ 고용유지조치 → 지원금 신청(매월, 관할 고용센터)
- ※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“고용보험 홈페이지([www.ei.go.kr](http://www.ei.go.kr))”에서 가능하며,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+센터를 통해 문의